

「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 외 16명

2. 제안이유

-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병역명문가 지원, 예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협조 요청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 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 제2조, 제22조
- 부서검토: 안전재난과 외 12개 부서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기 타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어,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의무이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- 한편, 안 제6조제2항에서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, 입장료,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안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은 예우대상자 가족을 제외한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만 규정되어 있음.
- 향후, 집행기관에서는 예우대상자 가족에게까지 감면을 확대하고, 더욱 많은 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를 폭넓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.